#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73

발의연월일: 2024. 10. 24.

발 의 자: 강명구·최수진·조경태

서지영 • 서명옥 • 권성동

구자근 • 이헌승 • 박덕흠

임종득 · 배준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국내 대부분의 인수·합병은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 소액 주주를 보호하는 권리보호 장치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왔음.

이는 EU, 일본, 미국의 경우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수·합병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의 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도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인수·합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되, 기업 간시너지를 창출하는 인수·합병의 순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안 제146조의2 신설)

의무공개매수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당해매수등 이후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의무공개매수하도록하되,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둘 수있도록 함.

나. 의무공개매수공고 및 신고서 제출(안 제146조의3 신설)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의 매수등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매수할 주식의 발행인, 매수의 목적, 매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의무공개매수조건 등을 공고하여야 함.

다. 의무공개매수의 철회(안 제146조의4 신설)

의무공개매수는 철회할 수 없으나, 대항하는 매수가 있거나 의무공 개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한 경우 등은 예외로 철회할 수 있도 록 함.

라.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 금지(안 제146조의5 신설)

의무공개매수자는 선행매수일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마. 의무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안 제146조의6 신설)

의무공개매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주식을 매수하여야 함.

바. 의무공개매수에 따른 의결권 제한(안 제146조의7 신설)

선행매수를 한 자가 의무공개매수 공고를 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결권이 제한됨.

사. 의무공개매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안 제146조의8 신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정정을 명하 거나 필요한 때에는 의무공개매수를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음.

#### 법률 제 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제2장제1절에 제146조의2부터 제14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6조의2(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이 절에서 "의무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자기주식은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증권시장 밖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특별관계자가 해당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해당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가되는 경우 당해 매수등(이하 "선행매수"라 한다) 이후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수 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의무공개매수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③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전환사채권등"이라 한다)의 권리의 행사로 의결 권 있는 주식을 취득한 때에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해당 회사 발 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 는 주식의 합계가 해당 회사 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를 포 함한다)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주식 을 추가로 의무공개매수하여야 한다.
- ④ 제133조제2항, 제4항은 의무공개매수에 준용한다. 이 경우 "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의무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공개매수"를 "의무공개매수가로, "주식등"을 "주식"으로 본다.
- 제146조의3(의무공개매수공고 및 의무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등) ①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의 매수등이 있은 날(대통령 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날이 있는 경우 그 날로 한다)로부터 15일 이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의무공개매수공고"라 한다) 하여야 한다.
  - 1.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 2. 의무공개매수할 주식의 발행인
  - 3. 의무공개매수의 목적

- 4. 의무공개매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주식의 수를 기재한다.
- 5. 의무공개매수 기간·가격·결제일 등 의무공개매수조건
- 6. 매수자금의 명세,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34조제2항(다만, 제4호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주식의 수를 기재한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의무공개매수에 준용 한다. 이 경우 "공개매수자"는 "의무공개매수자"로, "공개매수신고 서"는 "의무공개매수신고서"로, "공개매수공고일"은 "의무공개매수공 고일"로 본다.
- ③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의 규정은 의무공개매수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신고서"는 "의무공개매수 정정신고서"로, "공개매수설명서"는 "의무공개매수설명서"로 본다.
- 제146조의4(의무공개매수의 철회 등) ① 의무공개매수자는 의무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는 의무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의무공개매수에 대항하는 매수(의무공개매수기간 중 그 의무공개매수에 대항하는 선행매수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기간의 말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제1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 경우 "응모"는 "의무공개매수 응모"로, "응모주주"는 "의무공개매수 응모주주"로 본다.
- 제146조의5(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의무공개매수자(그 특별관계자 및 의무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는 선행매수일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주식을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등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식의 매수등을 하더라도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할 수 있다.
- 제146조의6(의무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① 의무공개매수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 의무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매 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의 전부를 의무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지체없이 매수하여야 한다. 응모한 주 식의 총수가 공개매수 예정주식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41조제 1항제2호를 준용한다(이 경우 "주식등"을 "주식"으로 본다).
  - ② 의무공개매수자가 의무공개매수를 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균일하여야 한다.
  - ③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의무공개매수 신고서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공개매수결과보고서"는 "의무공개매수결과보고서" 로 본다.
- 제146조의7(의무공개매수에 따른 의결권 제한 등) ① 제146조의2제2항

에 따른 선행매수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행매수를 한 다음 날부터 의무공개매수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선행매수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제146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공개매수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의무공개매수공고 또는 의무공개매수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 3. 제146조의4에 따른 의무공개매수 철회 사유, 절차를 위반하여 의 무공개매수를 철회한 경우(이 경우 "선행매수를 한 다음날"을 "철 회한 다음날"로 본다)
- ②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로부터 상당기간 의무공개매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행매수한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46조의2제2항·제3항, 제146조의3제1항 또는 제146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매수한 주식(선행매수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선행매수한 주식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46조의8(의무공개매수에 관한 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

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자, 의무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 의무공개매수사무취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자, 의무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 의무공개매수사무취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의무공개매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1. 의무공개매수공고 또는 제146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36조제 5항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의무공개매수신고서, 의무공개매수 정정신고서 또는 의무공개매 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 의무공개매수공고, 의무공개매수신고서, 의무공개매수정정신고서, 제146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36조제5항의 공고 또는 의무공 개매수결과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 4. 제146조의3제3항 또는 제14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 신고서, 의무공개매수 정정신고서 또는 의무공개매수 철회신고서

- 의 사본을 발행인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46조의3제3항 또는 제146조의4제2항에 따른 의무공개매수신고 서, 의무공개매수 정정신고서 또는 의무공개매수 철회신고서 사본 에 의무공개매수신고서, 의무공개매수 정정신고서 또는 의무공개 매수 철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 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경우
- 6. 의무공개매수설명서에 관하여 제146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 37조를 위반한 경우
- 7. 제146조의4제1항 또는 제146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39조제2 항을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를 철회한 경우
- 8. 제146조의5를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한 경우
- 9. 제146조의6을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를 한 경우
- 10. 제146조의7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선행매수한 주식에 대한 의 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44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의2. 제146조의2를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매수등을 한 자
- 제445조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9의2. 제146조의7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공개매수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식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공포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46조의2(의무공개매수의 적용
	대상) ① 이 절에서 "의무공개
	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
	여 의결권 있는 주식(자기주식
	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
	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
	<u>다.</u>
	② 증권시장 밖에서 주권상장법
	인 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의 의
	결권 있는 주식의 매수등을 하
	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해당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
	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제외한
	<u>다)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u>
	한 최대주주(본인과 특별관계자
	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해
	당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

00분의 25 이상인 경우를 포함 한다)가 되는 경우 당해 매수등 (이하 "선행매수"라 한다)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의무공개매수 하 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 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전환사 채권등"이라 한다)의 권리의 행 사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 한 때에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 가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해당 회사 주식의 100분 의 2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통 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주식 을 추가로 의무공개매수하여야 한다.

④ 제133조제2항, 제4항은 의무

<신 설>

공개매수에 준용한다. 이 경우 "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의무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공개 매수"를 "의무공개매수"로, "주 식등"을 "주식"으로 본다.

- 제146조의3(의무공개매수공고 및 의무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등)
  ①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의 매수등이 있은 날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날이 있는 경우 그 날로 한다)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의무공개매수 공고"라 한다) 하여야 한다.
  - 1.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 2. 의무공개매수할 주식의 발행인
  - 3. 의무공개매수의 목적
  - 4. 의무공개매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수 이상의 주식의 수를 기 재한다.
  - 5. 의무공개매수 기간·가격·결 제일 등 의무공개매수조건

- 6. 매수자금의 명세, 그 밖에 투 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② 제134조제2항(다만, 제4호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 상의 주식의 수를 기재한다), 제 3항부터 제5항까지 의무공개매 수에 준용한다. 이 경우 "공개매 수자"는 "의무공개매수자"로, "공개매수신고서"는 "의무공개 매수신고서"로, "공개매수공고 일"은 "의무공개매수공고일"로 본다.
- ③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의 규정은 의무공개매수신고에 관 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신 고서"는 "의무공개매수 정정신 고서"로, "공개매수설명서"는 "의무공개매수설명서"로 본다.

제146조의4(의무공개매수의 철회등) ① 의무공개매수자는 의무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는 의무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다. 다 만, 의무공개매수에 대항하는 매수(의무공개매수기간 중 그

<신 설>

<신 설>

의무공개매수에 대항하는 선행 매수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기간의 말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39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응모"는 "의무공 개매수 응모"로, "응모주주"는 "의무공개매수 응모주주"로 본 다.

제146조의5(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의무 공개매수자(그 특별관계자 및 의무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는 선행매수일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주식을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등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기하고는 대수등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식의 매수등을 하더라도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신 설>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 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 을 할 수 있다.

제146조의6(의무공개매수의 조건 과 방법) ① 의무공개매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 의무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매수조건과 방법에 따라 응모한 주식의 전부를 의무공개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지체없이 매수하여야 한다.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공 개매수 예정주식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41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이 경우 "주식등"을 "주식"으로 본다).

- ② 의무공개매수자가 의무공개 매수를 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 은 균일하여야 한다.
- ③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의무공개매수 신고서 등에 관하여준용한다. 이 경우 "공개매수결과보고서"는 "의무공개매수결과보고서"로 본다.

제146조의7(의무공개매수에 따른 의결권 제한 등) ① 제146조의2

<신 설>

제2항에 따른 선행매수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행매수를 한 다음 날부터 의무공개매수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선행매수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제146조의3제1항에 따른 기 간 내에 의무공개매수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의무공개매수공고 또는 의무 공개매수신고서의 중요한 사 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 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 3. 제146조의4에 따른 의무공개 매수 철회 사유, 절차를 위반 하여 의무공개매수를 철회한 경우(이 경우 "선행매수를 한다음날"을 "철회한 다음날"로 본다)
- ②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사유 가 발생하였으나, 그로부터 상 당기간 의무공개매수 절차를 완 료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 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행매수한 주식의 처분을 명할수 있다.

③ 제146조의2제2항·제3항, 제 146조의3제1항 또는 제146조의 3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3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공개매 수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매수한 주식(선행매수한 주식을 포함한 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선 행매수한 주식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46조의8(의무공개매수에 관한 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자, 의무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 의무 공개매수사무취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u><신 설></u>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자, 의무공개매수 자의 특별관계자, 의무공개매수 사무취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 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의무 공개매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 리령으로 정한다.

- 1. 의무공개매수공고 또는 제14
   6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
   136조제5항의 공고를 하지 아
   나한 경우
- 2. 의무공개매수신고서, 의무공 개매수 정정신고서 또는 의무 공개매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 3. 의무공개매수공고, 의무공개매수정 매수신고서, 의무공개매수정 정신고서, 제146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36조제5항의 공고 또는 의무공개매수결과

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 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 4. 제146조의3제3항 또는 제146 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 공개매수신고서, 의무공개매 수 정정신고서 또는 의무공개 매수 철회신고서의 사본을 발 행인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 오
- 5. 제146조의3제3항 또는 제146 조의4제2항에 따른 의무공개 매수신고서, 의무공개매수 정 정신고서 또는 의무공개매수 철회신고서 사본에 의무공개 매수신고서, 의무공개매수 정 정신고서 또는 의무공개매수 절회신고서 또는 의무공개매수 철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경우
- 6. 의무공개매수설명서에 관하여 제146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37조를 위반한 경우
- 7. 제146조의4제1항 또는 제146 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5. (생 략) <신 설>

16. ~ 29. (생략)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명의 장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9. (생략)

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공
개매수를 철회한 경우	

- 8. 제146조의5를 위반하여 의무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수등을 한 경우
- 9. 제146조의6을 위반하여 의무 공개매수를 한 경우
- 10. 제146조의7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선행매수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에444조(벌칙)
1. ~ 15. (현행과 같음)
15의2. 제146조의2를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
하고 주식의 매수등을 한 자
16. ~ 29. (현행과 같음)
세445조(벌칙)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19의2. 제146조의7을 위반하여의결권을 행사한 자20. ~ 48. (생 략)20. ~ 48. (현행과 같음)